

Update on Limitation of  
Tax Office Services in  
response to COVID-19 <sup>P1</sup>

Update on Limitation of  
Tax Court Services in  
response to COVID-19 <sup>P1</sup>

Tax incentives in relation  
to COVID-19 –  
implementing rules <sup>P3</sup>

## COVID-19 에 따른 세무서 행정에 대한 변경 안내 업데이트

2020 년 3 월 15 일에 DGT 는 SE-13 를 통하여 COVID-19 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년 3 월 16 일부터 4 월 5 일까지 세무신고 기한 연장 등의 행정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텍스플래쉬 4 번([TaxFlash No.04/2020](#))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GT 는 2020 년 4 월 2 일에 추가적으로 Circular Letter No.SE-21/PJ/2020 을 통하여 '확산방지를 조치기간'을 2020 년 4 월 21 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E-13 에서 명시한 조치들이 연장되어 세무서는 대면서비스를 요구하는 일부 서비스의 제한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COVID-19 에 따른 조세법원 서비스의 제한 업데이트

조세법원은 2020 년 3 월 16 일과 18 일에 각각 SE-01 과 SE-02 를 발표하여 정부의 COVID-19 확산방지 및 예방 노력에 동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조세법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텍스플래쉬 5 번([TaxFlash No.05/2020](#)) 및 6 번([TaxFlash No.06/2020](#))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법원은 2020 년 4 월 2 일에 추가로 Circular Letter No.SE-03/PP/2020(SE-03)을 통하여 기존의 변경된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 1.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기간(“확산방지 기간”)의 연장

SE-03은 기존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기간을 2020년 4월 2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동 기간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2. 조세법원 소송절차(공청회) (Tax Court proceedings)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기간 내에 예정된 모든 조세법원 공청회는 연기될 예정입니다. 연기된 공청회는 각 납세의무자에게 전자미디어를 통하여 안내될 예정입니다.

## 3. 확산방지 기간 내에 조세소송 신청에 대한 규정

### a) 조세법원에 직접 조세소송(Banding)을 신청하는 경우

확산방지 기간은 조세법원법(Law No.14/200) 제 35 조 2 항에 명시된 조세소송의 신청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03은 조세소송의 신청기한이 2020년 3월 17일 부터 4월 21일내에 속하는 경우에 36일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소송의 신청 마감기한이 2020년 4월 21일인 경우에 36일 연장된 마감기한은 2020년 5월 27일입니다.

### b) 우편을 통한 조세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우편을 통한 조세소송의 신청 마감기한은 현행 조세법원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4. 확산방지 기간 내에 소송 신청에 대한 규정

### a) 조세법원에 직접 소송(Gugatan)을 신청하는 경우

조세법원에 직접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은 조세법원법 제 40 조 4 항과 5 항이 적용되며, 동 조항에서는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소송의 신청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기한은 해당 상황이 종결된 시점(즉, 확산방지 기간 종료시)부터 14일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소송의 신청기한이 2020년 3월 17일 부터 4월 21일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소송 신청기한은 2020년 5월 5일이 됩니다.

b) 우편을 통한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상기에서 설명한 조세소송과 동일하게, 우편으로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기한은 현행 조세법원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5. 조세법원 행정절차와 공청회 기한 제한에 대한 규정

확산방지 기간은 아래의 기한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사는 조세소송이 신청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공청회를 개시하여야 함.
- 판사는 소송이 신청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공청회를 개시하여야 함.
- 판사는 조세소송이 신청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공청회를 통한 판결을 내려야 함. 다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이 연장 가능함.
- 판사는 소송이 신청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공청회를 통한 판결을 내려야 함. 다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이 연장 가능함.
- 판사는 조세법원법 제 82 조에서 규정하는 긴급공청회(*Sidang Acara Cepat*)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특정 공청회를 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함.

## 6. 지원 서비스(Helpdesk services)

조세소송 및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의 신청과 관련한 접수와 헬프데스크를 통하여 기타 레터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와 모든 안내서비스는 확산방지 기간동안 중단됩니다. 동 기간 동안에는 납세의무자는 이메일([informasipp@kemenkeu.go.id](mailto:informasipp@kemenkeu.go.id)), 웹사이트([www.setpp.kemenkeu.go.id](http://www.setpp.kemenkeu.go.id)) 및 왓츠앱(+628119202032)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7. 조세법원 결정서 및 재심청구 결정서의 통지 서비스

조세법원 결정서 및 재심청구 결정서의 통지는 확산방지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 COVID-19 에 따른 세제혜택 - 시행규정

재무부는 2020 년 3 월 21 일 자로 PMK-23 를 통하여 COVID-19 확산으로 영향을 받는 특정 산업에 대하여 일부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PMK-23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텍스플래쉬 8 번([TaxFlash No.08/2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GT 는 2020 년 3 월 31 일에 PMK-23 에서 언급한 세제혜택의 시행규정으로 Circular Letter No.19/PJ/2020 (SE-19)를 발표하였습니다.

SE-19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Article 2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세의 정부보조

동 세제혜택은 적격한 납세의무자가 DGT 에 통지를 함으로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DGT 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GT 는 온라인 신청서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동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적격한 납세의무자는 통지서의 제출시점부터 2020 년 9 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정부가 부담(*Ditanggung Pemerintah/DTP*)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Article 21 원천징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납부고지서(*Surat Setoran Pajak/SSP*) 또는 Article 21 개인소득세 DTP 를 위하여 ID Billing 을 출력하여 “*PPh Pasal 21 Ditanggung Pemerintah eks PMK No.23/PMK.03/2020*”의 문구를 날인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e-SPT 를 사용하는 경우, SSP 또는 ID billing 에 9999999999999999 의 NTPN 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2. Article 22 수입 원천징수세

동 세제혜택은 조세감면서한(*Surat Keterangan Bebas/SKB*)을 통하여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동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DGT 온라인 시스템에 SKB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DGT 는 적격한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수입 원천징수세에 대하여 SKB 를 발행하며, 적격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각 서한을 발부하여야 합니다.

### 3. Article 25 월선납법인세

적격한 납세의무자는 DGT 에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월선납법인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DGT 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GT 는 온라인 신청서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동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적격한 납세의무자는 통지서의 제출시점부터 2020 년 9 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선납법인세의 감면 혜택의 기준금액은 납세의무자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a. 납세의무자가 2019 년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2019 년 법인세 신고서에 따른 월선납법인세 금액;
- b. 납세의무자가 2019 년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19 년 세무기간(12 월)에 납부한 월선납법인세 금액;
- c. 납세의무자가 사업의 부진에 따른 월선납법인세 경감 승인을 받은 경우 - 월선납법인세 경감을 승인받은 결정금액;
- d. 특정납세의무자(신규납세의무자, 은행, 정부소유기업, 상장기업 및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타 납세의무자(개인 및 특정기업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 재무부 규정에 따라 특정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월선납법인세 금액.

### 4. 부가세 조기환급

PMK-23 에 따른 부가세 조기환급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월별 부가세 신고서에 조기환급신청으로 작성하는 경우 - 신청서상 환급금액;
- 부가세신고서상 환급대상 금액과 납세의무자의 실제 환급요청금액이 다른 경우 - 납세의무자는 재무부 규정 No.39/PMK.03/2018 의 첨부 F 의 양식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한을 제출하여야 함.

DGT 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형식요건과 금액요건을 검토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DGT 의 자세한 검토절차는 SE-1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세제혜택 관련 실행보고서 제출

납세의무자가 Article 21, 22 및 25 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은 반드시 실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실행보고서 파일을 DGT 의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하기의 기한 내에 DGT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년 4월 부터 6월까지의 기간 – 2020년 7월 20일까지 제출;
- 2020년 7월 부터 9월까지의 기간 – 2020년 10월 20일까지 제출.

## 6. 기타

산업분류코드(*Klasifikasi Lapangan Usaha/KLU*)

PMK\_23 은 각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KLU 는 2018년 법인세신고서상의 KLU 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KLU 는 Tax ID 등록시 발부받은 세적등록서류(*Surat Keterangan Terdaftar*)와 DGT 시스템상 마스터파일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서류상에 KLU 가 다른 경우에는 SE-19 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KLU 가 상이한 사항을 해소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적격 납세의무자(Non-eligible taxpayers)

적격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PMK-23 에 따른 세제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DGT 는 SE-19 에 따라 동 사항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 taehun.jung@pwc.com

**박인혁 회계사**

E: inhyuk.park@pwc.com

**박재성 회계사**

E: jay.y.park@pwc.com

##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mailto:abdullah.azis@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mailto:gerardus.mahendra@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mailto:peter.hohtoula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mailto:adi.poernomo@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mailto:hasan.chandra@id.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id.pwc.com](mailto:raemon.utama@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mailto:adi.pratikto@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mailto:hendra.lie@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mailto:runi.tusita@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mailto:alexander.lukito@id.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id.pwc.com](mailto:hisni.jesica@id.pwc.com)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mailto:ryosuke.r.se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mailto:ali.widodo@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mailto:hyang.augustiana@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mailto:ryuji.sugawara@id.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id.pwc.com](mailto:amit.xz.sharma@id.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id.pwc.com](mailto:kianwei.chong@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mailto:soeryo.adjie@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mailto:andrias.hendrik@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mailto:laksmi.djuwita@id.pwc.com)

**Sujadi Lee**  
[sujadi.lee@id.pwc.com](mailto:sujadi.lee@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mailto:anton.a.manik@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mailto:lukman.budiman@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mailto:sutrisno.ali@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mailto:antonius.sanyojaya@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mailto:mardianto.mardianto@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mailto:suyanti.halim@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mailto:ay.tjhing.phan@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mailto:margie.margaret@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mailto:tim.robert.watso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mailto:brian.arnold@id.pwc.com)

**Mohamad Hendriana**  
[mohamad.hendriana@id.pwc.com](mailto:mohamad.hendriana@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mailto:tjen.she.siung@id.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id.pwc.com](mailto:dexter.pagayonan@id.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id.pwc.com](mailto:oki.octabiyanto@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mailto:turino.suyatman@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mailto:engeline.siagian@id.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id.pwc.com](mailto:omar.abdulkadir@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mailto:yessy.anggraini@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mailto:enna.budiman@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mailto:otto.sumaryoto@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mailto:yuliana.kurniadjaja@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mailto:gadis.nurhidayah@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mailto:parluhutan.simbolon@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mailto:yunita.wahadaniah@id.pwc.com)

[www.pwc.com/id](http://www.pwc.com/id)

 @PwC\_Indonesia

 PwC 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mailto: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0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